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03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정동만·최형두·강민국

이종배 · 김기현 · 김형동

구자근 • 박성민 • 고동진

김성원 · 김용태 · 엄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체로, 2010년에 시범 시행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된 이후,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 원에서 2023년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도 지속해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 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안 제2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라.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4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자원 발굴, 마을기업 사업의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 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지역자원의 조사 및 사업의 발굴,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 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마을기업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이란 주민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한 범위의 지역에서 경제·사회·문화·환경을 공유하는 곳을 말한다.
-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마을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 3.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유형· 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제11 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을 통하여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등

- 제6조(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 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 4. 마을기업지원센터 등 마을기업 지원체계 구축

- 5.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과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시 · 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설립 · 운영 등 마을기업 지원체계 구

축

- 3. 시 · 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 4. 시 · 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5. 시 · 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도계획 수립·변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시·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에,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하다)를 둔다.
 -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마을기업 사업에 관한 평가 · 관리
 - 3.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21조에 따른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원계 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 도에 시·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육성

-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마을주민이 대표자 및 구성원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 법」에 다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 5. 지역의 소득·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신청·심사·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마을기업의 사업) 마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또는 시·도계획에 포함된 사업
 - 2. 지역의 돌봄, 평생학습, 보건의료, 주거 등 사회서비스 사업
 - 3. 지역의 생태와 경관 및 시설 관리사업
 - 4. 지역의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 5. 지역의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사업
 - 6. 그 밖에 마을기업에 적합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 3. 시설비 등의 지원ㆍ융자
 - 4. 부지구입 융자
 - 5.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7.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4조(청년 마을기업 등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구성원에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있는 마을기업으로서 청년 구성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 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5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이 조에서 "마을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마을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제16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 제17조(마을기업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 관·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및 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지원기관 과의 연계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자원 발굴
 - 2. 마을기업의 성과평가
 -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 5. 전국단위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 · 운영 지원
- 6. 지역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마을기업 사업자 교육
-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 8. 마을기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공유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 9. 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지원ㆍ지도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센터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 (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학, 연구원, 공공기 관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자원의 조사 및 관련 사업의 발굴

- 2.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 3. 마을기업과 지역 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기업·소상공인·교육기관·금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 4. 마을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5. 마을기업 관련 주민 교육 및 홍보
- 6. 마을기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 7. 그 밖에 마을기업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마을기업협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마을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2.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 3. 마을기업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 4. 마을기업 사업자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 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 6. 마을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부설 기관 운영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마을기업 관련 사업
- 8.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 9. 지역의 국가유산 보존 관리 활용 사업
- 10. 그 밖에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 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2조(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감독하며, 제 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마을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검사를 한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마을기업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3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자
 -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24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